

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?

Maybe 그럴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겠지.

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뜻한다.

아아~점유란 사실상의 지배인데 사실상이라는 키워드를 보면 완전한 지배같은건 아닌가보네.

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질을 사용.수익.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.

수익이 뭐지?어쨌든 소유란 ~~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래

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

??따라서? 아 이게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되는거구나. 그리고 항상이니까 때때로는 점유자=소유가 일치하겠네?

일단 연결을 해보자면

사용하고 있는 사람
(점유)

주인
(소유)

라고 하고 넘어가보자.

물건을 빌려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.

아~빌려쓰거나 보관하고있거나 이런 우리가 알고있는 상식적인 것들이 물리적 지배구나~

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.

어!그럼 직접점유자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점유라고 하나?

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.

아~직접점유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간접점유라고하고 이것도 점유에 포함되구나~

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.

○○ 알고있는 얘기야

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

점유는 소유(주인)을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데

도에 주의하며 읽고 그 전 문단에서 했던 얘기들을 상기해보자~

그리고 공시의 정의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겠네

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.

아~공시란 물건에 대한 소유권 즉 누가 주인인지를 알려주는 거래

물건 중에서도 피아노, 금반지,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.

어! 아까 선지 대충 훑으면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봤으니까 이걸 중요한 키워드로 예시했구나 또 점유에 의해 소유권(주인)이 공시된다고 했는데

점유는 종류가 두가지야. 직접점유 그리고 간접점유

그럼 직접점유나 간접점유에 의해 누가 주인인지가 알려주는건가?

그런데 아까 점유자=소유자라고 했으니 직접점유자가 주인인 경우, 간접점유자가 주인인 경우 두 개 다 있겠네?

그럼 생각해 보면 직접점유자(물리적 지배)가 주인인 경우

또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애가 주인인 경우(애가 주인이고 직접 점유자는 뭐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거나 하겠지 ㅇㅇ)